

3. 勤勞者의 住居安定과 목돈마련支援에 關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

總理令 第552號 1996. 3. 9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서 담보 취득을 생략하는 대출금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대출금을 제외한다.

제4조 제3항, 제11조 제2항 본문, 제22조

및 제25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 제7조 및 제29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주택기금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출금의 범위에서 담보취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제외함으로써 최근 재원조성이 어려운 국민주택기금의 출연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